사 업 운 영 계 획 서

사 업 명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6년차)
주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실행주체	의성군산림조합

2023. 12. .

의 성 군 산 림 조 합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사업운영계획서 (2024년도 - 6년차)

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6년차)

2) 목　　적

○ 조림사업 실행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목재생산림 조성

○ 임도신설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

○ 한국형산림인증을 통한 인증받은 목재의 유통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산림경영자체가 산주에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 소득 창출

○ 산림 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

3) 사업범위 :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사업의 실행【사업 실행에 따른 실시설계 및 사업비정산용역의 대행(외주사업으로 실행), 직접사업의 실행】

4)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신청액

○ 사업기간 : 2024. 01. ~ 2024. 12.

○ **소요예산 : 761,782천원**

※ 예산과목 : 민간대행사업비(402-03)

5) 기대효과

○ 조림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는 경제림 육성

○ 임도시설을 통한 사유림 경영기반 확충 및 단기소득임산물 수확을 위한 접근성을 높여 소득창출 기대

○ 한국형산림인증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으로 선도단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및 신규 소득 창출 도모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선도산림경영단지를, 2024년도 (6년차)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기반시설 조성(임도), 조림지 풀베기 등을 실행하여 10년 내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유림경영단지 조성

2) 추진체계 및 역할 : 산림청(총괄기관), 의성군청(주관기관), 의성군산림조합(전문경영주체)

3. 사업내용

1) 기본계획에 반영된 직접사업 실행【임도,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사업비정산용역의 대행, 사업관리경비의 집행

○ 사업대상지 :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선도산림경영단지 일원

2) 2024년도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세부추진 일정

구분	사업별	사업량 (ha, km)	세부추진일정				비고
			대상지 확 정	설계	실행	정산	
조림	조림사업	9.0	2023	2024	3-4월	4월	동변리 산76, 산81-2, 산81-7
숲가꾸기	풀베기사업	49.4	2023	2024	7-9월	9월	연 2회
기반시설	임도신설	1.2	2023	2024	4-10월	10월	동변리 산56-2외

3) 2024년도(6년차) 통합사업비 산출 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엑셀 파일로 대체

※ 단지조성에 따른 본 사업비는 실시설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 직접사업비는 개별사업정산하며, 대행사업관리비 중 간접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인건비, 사업관리경비는 2024년도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

4. 2024년도(6년차) 통합사업비 산출 근거 및 정산방법

1) 경영주체의 사업추진인력 구성 및 역할(직접인건비)

○ 선도 산림경영주체의 추진 조직 구성

- 전문경영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과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전담인력(경영전문가) 배치

  * 경영주체의 타 업무와 겸임 불가

- 경영주체 내에 경영전문가 1인과 경영(사업)담당 1인에 의한 선도산림경영팀을 구성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조달청이 발표하는 토목공사 요율 적용
- 기타 인건비 등은 조달청 제경비요율의 일반관리비에 해당

○ 선도 산림경영단지 전임자 자격요건

구 분	주 요 업 무	자 격 요 건
경영 전문가	- 선도경영 업무 총괄 - 산주 조직화 등	° 경영주체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또는 3년 이상 장기계속 근무가 가능한 경영주체 직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경영주체 직원 * 경영주체가 산림조합인 경우는 지도원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경영 담당	- 산주 조직화 및 지도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 설명/평가 수행 등 - 선도경영 전담	° 외부전문가 또는 경영주체 직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경영주체 직원 * 경영주체가 산림조합인 경우는 근무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보유자

2) 선도산림경영단지 전문경영주체 인건비 지원 기준

○ **단지경영주체의 전임자 인건비**

- 단지경영주체의 전임자 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한 업무 가중치에 의한다.

  * 오스트리아의 경영면적별 전문경영인력 배치기준과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작성

- 단지경영주체의 책임경영자 인건비는 대리경영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 산림조합 지도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매년의 인건비 인상률(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함)을 반영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함.

* 기준금액('15년)

- 경영팀장 1인의 인건비 기준 : 연봉 총액으로 60,000,000원
- 경영담당 1인의 인건비 기준 : 연봉 총액으로 50,000,000원

– 경영주체의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며, 경영주체가 산림조합(중앙회)이고, **담당자가 산림경영지도원인 경우는 정부보조 지도원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함.

○ **선도 산림경영단지 전임자 배치 기준(2023년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인력구분	년 지급액	비 고
경영 전문가	**년 71,459,500원**	산림청 산림자원과-3062(2023.05.11.) 선도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 일부개정 적용
경영(사업) 담당자	**년 59,549,400원**	

* 주 1) 본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기준금액인 2015년 경영전문가 년 60,000,000원과 경영(사업)담당자 년 50,000,000원에 매년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적용.
* 주 2) 산림청에서 2022년 적용단가(경영전문가 70,265,000원, 경영(사업)담당자 58,554,000원)에 2022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률 1.7%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전문경영주체 경영전문가의 간접인건비 지원 기준**

–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로,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액을 직접 파악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기준에 의해 간접작업임금, 간접공임, 대기임금, 휴업임금, 급료, 종업원상여 등으로 나뉘며,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간접인건비는 직접인건비의 조달청 토목공사 요율을 적용한다.

○ **전문경영주체 경영전문가의 간접인건비 지원 기준**

-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노무비로,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액을 직접 파악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기준에 의해 간접작업임금, 간접공임, 대기임금, 휴업임금, 급료, 종업원상여 등으로 나뉘며,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간접인건비는 직접인건비의 조달청 토목공사 요율을 적용한다.
- 전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평가'에서 미흡이하로 평가된 단지는 경영책임자와 사업담당의 인건비를 차등 지원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미흡) 산림청에서 매년 시달하는 인건비 기준의 50% 지원
  * (부진) 산림청에서 매년 시달하는 인건비 기준의 30% 지원
  * 차액은 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3) 사업관리경비

- "사업관리"란 사업에 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휘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서 전문경영주체의 사업관리 활동은 산주의견수렴, 단지경영에 대한 총괄 기획, 운영은 물론 설계·감리 등 세부 사업을 발주 및 사업 추진 전반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사업관리비 산출방식에는 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산출방식이 있으나, 본 사업에는 실제 소요 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 사업관리경비에는 여비교통비, 차량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회의비, 산지재해보험료등 사업관리를 위한 일체의 경비를 반영하되,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 효율적 현장관리 및 산주 의견 수렴 등 참여도 증대를 위해 단지 내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은 컨테이너 등 간이시설을 임대해 사용한다.

4) 일반관리비

-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 또는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임원 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때 일반관리비는 개별적 파악이 어려우며,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기간수익에 총괄적으로 대응한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경영주체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경비를 말한다.
- 따라서, 본 사업에는 조달청 발표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5) 부가가치세

- 대행사업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문경영주체가 선도산림경영 활용을 용역사업의 형태로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 단지조성을 위한 임도 등 세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 종류별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 부가세 납부 대상 사업 :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산림욕장, 수목원조성·관리사업 등

- 이 경우 부과 대상금액은 인건비와 사업관리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등 총원가에 대하여 10%를 적용하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면제되므로 대행사업관리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다음의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 산출 부가세 : {재료비+산출경비(기계경비+운반경비+가설경비)}×10%

6) 외주사업비

① 보조(위탁)사업자는 보조(위탁)사업의 내용 중 용역의 품질 또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외주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체의 관점에서 산주의 의사를 반영한 산림경영이 필요하므로 관련 설계와 회계 전문가 위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등 다양한 외주 시행이 필요

② 외주사업 중 설계, 감리 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감리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통합사업비에 편성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 및 관리

-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는 공개경쟁 원칙 적용
- 기술 능력이 뛰어난 기술자가 참여토록 지역제한시 시·도 단위로 확대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경영 품질향상 대책(산림청 산림자원과-1153호, 2019.2.27.)

○ (설계검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검수가 불가능한 경우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설계 검수

- 최종검수는 경영책임관이 실시하되 운영협의회에 설계검수 지원단을 두고 검수의견을 받아 최종 검수
- 설계검수 지원단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 경영주체, 지자체, 전문가 중 3인을 지원단으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별도 구성
-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은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완료 10일 이전에 감리자를 선정하고, 전년도 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이전에 감리 발주하여 감리자의 검토의견을 받아 참고

* 선도 산림경영단지 클린경영 대책(산림청 산림자원과-5260호, 2020.9.8.)

○ (회계감사) 경영주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회계감사 유형 중 원칙적으로 이행감사(사업비정산 감사)를 실시

*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보고서(이행감사)를 제출

* 경영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경비는 경영주체가 부담

* 회계감사의 유형

·업무감사 : 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 절차를 검토 ·이행감사 :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 ·재무제표감사 :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

○ (산림사업의 외주사업 비율)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보수포함) 등 산림사업비의 20%이상은 외주사업비로 편성

- 외주사업비 중 개소당 또는 계약건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

*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국가(지방)계약법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

③ 사업비의 산정 및 원가계산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본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7) 단지조성 직접사업비

- 직접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위해 직접 또는 위탁 시행해야 할 임도, 숲가꾸기, 임목수확,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한다.
- 사업비는 해당사업 설계·감리 시행지침 등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한다.

가. 조림사업은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따른다.

나. 숲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따른다.

다.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의 벌채기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따른다.

라. 입목의 굴취와 이식사업은 “건설표준품셈 조경공사”를 따른다.

마. 임도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바.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설기준”과 “세부시설기준”을 따른다.

사. 산림복합경영 등 단기소득사업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산림복합경영)와 관련하여 재배 기반조성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가능하다.
- 경영주체 전임자는 단지 내 산주가 산림복합경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안내
- 다만,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계획(2019.3, 산림청)」에 따라 추진하는 단지별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설계·조성 및 3년 이내의 사후관리비를 선도단지 사업예산으로 집행가능)
- 각 사업비에는 사업별 제경비(이윤포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를 작성(설계금액)하여야 한다.
- 직접사업비는 설계금액의 88%이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행, 정산하여야 한다.
- 실행예산 편성 시에는 장비 임차료 등의 실 집행 비용 정산을 위해 비목간(재료비, 노무비, 경비)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총액은 설계금액의 88%를 초과할 수 없다.